

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국내사업장의 신·증설 유형 확대 (안 제3조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제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능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조업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연구공간 확대 또는 연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를 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 범위에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연구개발 역량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제품·서비스 유사성 판단기준 개선 (안 제3조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제도는 소재·부품 및 생산공정 중심으로 제품·서비스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어 첨단산업 육성, 공급망 재편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제품·서비스 유사성 판단 시 기능·용도, 핵심기술 및 공급망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공급망 내 신산업 전환,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투자를 촉진하고,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국내복귀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‘해외사업장 구조조정’ 면제대상에 핵심제조시설 추가(안 제3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첨단·공급망 분야에서 생산기술 연구개발, 시험제품 생산 등을 수행하면서 국내외 생산거점에 기술제공, 품질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에 추가하고, 인정 기준 및 절차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첨단·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역량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 거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 신설(안 제5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에 실무 검토체계가 부재하여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한 실무 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·취소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·검토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자금지원 운영기준 정비(안 제11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대상·지원내용·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,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